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8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상정된 안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2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2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2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2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2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2

(14시03분 개의)

○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14시04분)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가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정판매의 선행행위인 구매방해 및 부정구매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 확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온·오프라인에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를 하는 개정안.

둘째, 입장권 등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구입 가격에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5쪽입니다.

셋째, 암표 관련 행위를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모두 금지하는 개정안.

넷째,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에 관련해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첫째 부정판매 정의를 현행 유지하고,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노력으로 수정하며, 셋째 조승래 의원안과 같이 안 제6조의2제1항의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먼저 4쪽,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연숙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께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발의해 주셔서 그건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줄기로는 임오경 의원님 안으로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어젯밤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수렴에 미약했던 부분을 일단 보완해서, 워낙 문제가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서 많이 협의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만큼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6조의2제1항 부정판매 정의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임오경 의원안에 돼 있는데요. 그것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현행법과 같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는 협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행법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는 부분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기를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협회에서 우려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차관님, 정부안이 너무 물러진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임오경 위원** 연번 1번에서 13번까지 같은 취지 아닌가요?

○**민형배 위원** 같은 취지예요. 같은 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안 중에서 임오경 의원님 안을 먼저 보시면……

○**소위원장 박정하** 임오경 의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민형배 위원** 정부안 정리된 걸 좀 주세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임오경 의원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완화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 안 중에 임오경 의원안으로 했고, 그 임오경 의원님 안 중에 이런 이런 안은 이렇게 해서 협회안으로 좀 더 완화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안 중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래도 정연욱 의원님 안과 임오경 의원님 안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당 간사님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위낙 많은 13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장 축이 될 수 있는 안은 잡는 게 좋겠다 해서 임오경 의원님 안으로 해서 정연욱 의원님 안을 반영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여당 간사라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안에 여당 간사로서가 무슨 의미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차관님하고 처음 이 법안 갖고 논의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협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임오경 위원** 저한테 혜택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누가 들어도 그렇게……

○**김승수 위원** 차관님, 지금 암표 문제, 특히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문제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적이 돼 왔었고 공연법에 일부 반영했었는데 실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법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일단은 암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완화한 것도 그런 의미겠지만.

두 번째, 또 그런 실효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티켓 판매하는 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지만.

습니까.

실효적으로 단속을 하면서도 또 티켓 판매를 하거나 구매하거나 여기에 일반 평균적인 부담 조치보다 너무 과도한 규제나 부담을 줬을 경우에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이유로 해서 이 정도 규정이면 부담도 적절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식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항부터 13항까지 전문위원이 죽 말씀 주실 테지만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것은 현재 암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암표를 균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안에서 암표를 팔고 있는 영업행위의 범주를 어디까지 우리가 둘 건가.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건가, 아니면 법률적 제재를 줄 건가. 그리고 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둘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죽 들어 보시는데 차관님도 여기에 맞춰서, 제가 무르다고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심지어는 그게 단일 사업 목적이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 주고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맞춰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과태료 다 없앤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되느냐 여쭤본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부안으로 준비한 안이 통과되기를, 과태료 조항도 살리고 하기를 더 바라지만 김승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업계의 우려와 반대 여론도 있으니 두루두루,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고 업계의 활동을 옥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자 해서 과태료 조항은 양보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암표상에 대한 조항은 과징금이 3배까지, 나중에 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소위원장 박정하 2배, 3배, 5배 올라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형별 조항에다가 과징금이 신설이 되고 몰수·추징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암표, 나쁜 일 하는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은 살려 놨다, 업자를 옥칠 수 있는 과태료 조항은 풀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차관님 설명에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민형배 위원 국장님, 지금 차관님께서 개요를 죽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1항부터 13항까지 다 정리해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쟁점이 뭐뭐입니까?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암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형배 위원 범위.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별칙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별칙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니 제재수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민형배 위원 제재수단.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제재수단이 지금 여기에는 과징금, 과태료 그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신고기관을 법적 수단으로……

○민형배 위원 신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

크게 이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을 죽 내놨잖아요. 이 검토안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안하고 차이가 뭐예요?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범위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취지가 좋다라고만 하시고 다른 의견을 특별하게 주신 것은 아니었는데……

○민형배 위원 범위는 이상이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런데 온라인쇼핑협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감안하시라……

○민형배 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임오경 의원님 안이 어떻고 정연욱 의원님 안이 어떻고 협회안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정부안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정부안은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임오경 의원님과 정연욱 의원님이 비슷하게 부정구매, 부정판매를 나눠서 해 주셨는데요. 다 똑같은데 다만 정연욱 의원님 안에는 부정구매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들어가야 사실은 재판매하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이렇게 정의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케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임오경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재수단에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제재수단에서는 기존에 별칙이 있고, 이번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신설하는 거였는데 기존의 별칙은 현행대로 가고. 이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는 임오경 의원님 안을 따르고 그리고 대신에 과징금을 신설하되 과징금은 2배 3배 5배 이렇게 의원님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배로……

○민형배 위원 정부안은 몇 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3배로 되어 있는 임오경 의원님 안을 따르기를 바라

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3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2, 3, 5 중에 중간인 3배.

○소위원장 박정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신고기관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암표상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중간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관리 의무를 주기 위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거였는데 이번에 빼겠다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에 신고기관이 법에 규정되지 않아서 명확한 근거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기관을 여기에 명시해서 그분들이 실제 문제를……

○민형배 위원 명시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민형배 위원 포상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신고포상금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암표 같은 것은 사실 현장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저는 다른 정부안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소위원장 박정하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보태 드리면, 정연욱 의원안과 임오경 의원님 안에 보면 정연욱 의원님은 영업 상황이라고 그러나? 암표 판매행위를 보고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 임오경 의원님은 그 사항이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의무조항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항부터 14항까지 똑같은 건데 쟁점은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저는 범위, 제재수단, 신고기관, 포상에서 정부안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안을 다 고려했을 때 신고기관, 포상은 하는 걸로 하지만 제재수단의 과징금이 3배는 너무 약하다, 저는 5배가 좋겠다 싶고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 즉 치별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전문위원님, 1항부터 끝까지 14항까지 다 말씀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 주시고, 그중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쟁점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토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조금 전에 1항부터 13항까지 다 했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앞에 영업 범위와 과태료 부분만 보고를 주셨거든요.

○전문위원 김용규 아까 5쪽까지 드렸고요. 이번엔 7쪽입니다.

신고기관의 지정 관련하여 박수영 의원님 안은 신고기관의 비용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

으며, 정연욱 의원안은 비용 지원 및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자료들은 임오경 의원님 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여지가 크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암표의 경우 사인 간 소액 거래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면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보다 용이해지고 감시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혁·장철민·임오경·정연욱 의원안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으로 포상금 지급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은 보칙 장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고려할 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도 김선교 의원안과 같이 보칙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 소진의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정연욱 의원님 안과 같이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제재 조치인데요.

먼저 과징금입니다. 세 번째 네모 보시면, 과징금의 상한과 관련하여 조승래·정연욱 의원안은 판매금액의 2배, 임오경 의원안은 3배, 김재원 의원안은 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승래·임오경·김재원 의원안은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정연욱 의원님 안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수 입법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따르고 있고 동 조항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정연욱 의원님 안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조승래·임오경 의원님 안은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할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벌칙 관련해서 이춘석·조계원·박수영·김준혁·조인철·김선교·정연욱 의원님 안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있고, 김준혁·이춘석 의원님 안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이득액에 따라서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임오경·정연욱 의원님 안은 부정판매뿐만 아니라 입장권 등을 부정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

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이춘석·김준혁 의원님 안은 부정판매 이득액이 적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강유정·임오경·정연욱 의원님 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임오경·정연욱 의원님 안은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몰수·추징인데요. 임오경·정연욱 의원님 안은 과징금의 부과와 몰수·추징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이고 또 몰수는 형벌로서 병과가 가능하여 과중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이를 고려한 감경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부칙에서는 모든 법안이 다 6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6개월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범위 확대는 말씀을 드렸고요.

7쪽, 신고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저것부터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과태료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신고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출 의무에서 노력이 됨으로 해서 과태료 조항, 뒤에 나오겠지만 연동해서 과태료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하되 정연욱 의원님 개정안에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김선교 의원님의 안처럼 보착에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건, 여러 가지 규정하고 미세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제재 조치 과징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의 2배·3배·5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암표 근절의 효과성 그리고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3배 이하의 금액으로 있는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제공 조항은 정연욱 의원님의 개정안에 있는 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 과세정보 제공 규정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징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승래 의원님 개정안 3항에 신설한 강제징수 절차 관련 조항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16쪽, 제재 조치 벌칙과 관련해서 벌칙은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면서도 형벌로 선고하는 예는 많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것을 고려해서 벌칙 규정은 강화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벌칙과 병과가 되므로 46조의3으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내용을 신설해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신고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병과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조금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쪽, 몰수·추징과 관련해서 임오경 의원님 안대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 동의하고요.

다만 과징금의 감경 규정은 별도의 법에 두기보다는 새 시행령에다가 세부 규정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칙 6개월은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지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관님, 현행법으로도 어쨌거나 암표가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암표 판매로 처벌받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통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지금 사실 기준에는 거의…… 처벌 숫자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게 없고요. 올해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1만 건에 이르는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16건에 대해 입건이나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그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고요. 그거와 별도로 지금 국세청에서 본인들의 과세정보 이런 거를 확인해서 대규모 암표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 조사받고 있는 것 중에 매크로나 이렇게 한 대규모 암표 상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맞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기준에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공유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기준 법이 매크로만을 처벌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요즘 매크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경찰이 보면 분명히 매크로라고 의심되는, 예를 들어 100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구매를 했는데 그게 매크로인지 아닌지 분석해 내지 못해서 사실은 암표상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크로를 없애자는 게 정의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말든 암표로 이렇

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추정할 수 있는 건 다 일단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오늘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관련 입장권이고, 저번에 공연법에도 도입이 됐지만 그것도 같이 고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법이라든지 예술분야 티켓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문체부 내에서 이렇게 같은 체제로 가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다 협의해서 왔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결국은 이렇게 법이 통과됐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이 되고 적발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과 수단이 지금 구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 중원이 있어야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신고기관 지정 조항에 신고기관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재정 지원도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고기관에서 그 역할을……

○김승수 위원 신고기관에서는 단순히 신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특사경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고요. 일단 신고기관과 경찰과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 법이 통과되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서도 실효성 문제를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같이 검토가 돼서 제시가 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연법 등 관련이 돼 있어서 1법안소위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연동이 돼 있어서 오늘 논의에 따라서 1소위도 거기에 맞춰서 전체 상임위에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 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는 너무 물러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민형배 위원님은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김승수 위원님은 업계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 원안은 과태료 조항을 살려서 강하게 플랫폼 업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승수 위원 제 얘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술적인 조치까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현재 플랫폼 티켓 판매 업자는 결국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한두 개 플랫폼 사업자로 독과점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위원장 박정하 저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전 법안이 상정이 되고 합의되고 난

다음에 업계에서 볼멘소리도 많이 있고 일부 업체는 이러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온라인협회랑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수정안이 됐는데, 그 업체들은 어떤 거를 호소를 하길래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차관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주셔도 좋으니까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존 법률에 있는 것들은 예전에 다 합의가 됐던 안인데 지금 새로이 도입되는 안은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 이러니까 그럼 판매 정가가 또 뭐냐 이러면서…… 기존 법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개념인지 정리가 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가면 명확한데 판매 정가 이러면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거냐, 그리고 업체마다 수수료도 다를 수 있고 판매 정가라는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 이러면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더라도 큰 지장은 없겠다라고 그래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임오경 위원 기존 법 정의 규정에서 새로운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는 부정거래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말들에 있어서 부정판매는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아까 형벌 조항을 넣지 말고 과징금 조항으로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형벌 조항은 현재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 원, 3년을 올리지 않고 협행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과징금 조항은 새롭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신설을 하고.

○임오경 위원 신설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정부 수입으로 되지만 암표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내용을 좀…… 저는 이쪽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을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에서 이렇게, 저희가 몇 %로 정할지는 오늘 최종 논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10%든 일부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정부의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다 와닿지는 않은데 매크로 프로그램의 온라인상 균절을 막기 위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저희는 전체,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서 파는 행위를 균절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오경 위원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직거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크로를 통해서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있는 것만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제한을 풀어서 방법과 수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만, 정의를 할 때 원래 저희가 더 확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웃돈으로 파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는데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정말 1건으로 2만 원이나 3만 원을 주고 판 사람도 혹시 이걸로 잡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상습과 영업이라는 기준 표현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수단과 방법은 제한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임오경 위원** 과태료는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신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걸로 유지하고, 과태료는 없애고 과징금만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원래 없었습니다, 과태료는.

○**임오경 위원** 아까 20만 원 여기 법안에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벌금입니다, 벌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경범죄 처벌법, 다른 법이고요.

○**임오경 위원** 그럼 지금 문체부에서 통합 조정한 게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그리고 그다음에 티켓 사업자 등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신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거를 의무 조치를 노력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처리 담당하는 신고기관 지정 신설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들어가 있고요,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들어가 있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몰수·추징 신설 그다음에 과태료는 없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과태료는 없애는 걸로.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순서대로 해 볼게요.

지금 수정안으로 정부 측에서 제시한, 만약에 요청을 받은 해당 자료의 제출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연우 의원안인데 여기서 업계의 얘기를 들으셔서 ‘노력하여’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노력한다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원래 안대로…… 과태료 상한은 줄여 줬으면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만 아니라 일단 위원님들은?

○**진종오 위원** 저도 노력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지? 자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종오 위원** 노력이라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러면 과태료 조항이 신설이 돼야만 강제성을 갖

고요. 거기에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과태료 조항과 이 조항은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럼 과태료를 굳이 뺄 이유가 있어요?

○**진종오 위원**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뺀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제가 걱정인 거는, 업계 의견을 많이 들으셨느냐고 한 거는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가령 기름만 팔고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팔지 말라고 하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유소 옆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데는 기름 팔지 않아도 사실은 음식 팔고 편의점에서 파는 걸로 당분간 가지만 어떤 데는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과하고 구제를 해 줄 방법이 있느냐 이런 고민인 거지 과태료를 주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제 생각은 어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현행의 정의대로 상습 또는 영업 이런 건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되 과태료 조항은 실효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 두기를 바라는데 장관님께 아침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관님이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쪽을 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티켓과 관련된 큰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기에 목소리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작은 업체들이 모인 데, 여기에는 중고 티켓을 다루는 업체들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소위원장 박정하** 임 위원님 말씀 주세요.

○**임오경 위원** 자료제출에 있어서 말씀 나오신 것처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외적인 모든 법안을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관련돼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일원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또 추가적으로 내는 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정하** 아니, 조금 논의하고……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애초에 입장권 판매업자들한테 과도한 규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당초 안에, 사실은 정연숙 의원님 안 같은 데 보면 부정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게 아주 큰 규모의 업체 같으면 모르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려는 업체라든지 다른 유사 플랫폼 업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티켓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명백히 암표행위로 의심이 되거나 또 상습적인 암표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나 이용자가 있으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라든지 마약류 관련된다든지 이렇게 관련 취급하는 업종의 관계자들이 신고하

도록 하는 의무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의무는 좀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혹시나 기술적 조치는 업체별로 규모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그 부분을 더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하게. 그런데 자료제출하는 부분은 성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부분은 안 내면 과태료를 두어서 실효성을 좀 살리고 기술적 조치는 노력하게 두는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게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안 하면 과태료로 하고……

○소위원장 박정하 자료를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과징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술적 조치는 노력하는 것으로 두고. 왜냐하면 업체들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김승수 위원 자료제출도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암표, 매크로나 아니면 영업적인 암표상이나 아니냐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할 때 나름대로의 조사할 수 있는 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티켓, 입장권 판매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시간으로. 굉장히 상습적으로 티켓을 누군가 구입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여러 가지 종류의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나중에 만약에 신고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봤는데 진짜 조금만 여기서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사전에 신고가 될 수 있었는데 전혀 스포츠 입장권 판매업체 플랫폼에서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정도도 안 했다는 건 신성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거다’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지 좀 더 활발하게 신고나 빨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정도 의무 부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대단히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임 위원님.

○임오경 위원 다른 법률에서도 의무조항이 처벌조항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다수로 하잖아요, 의무조항이 아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처벌조항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다수로 하는데 의무조항으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의무조항으로 하되 처벌조항은 두지 않는 중재안을 제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보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

장에서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조항을…… 그러니까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하되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는 이게 더, 과태료는 맞지 않지만 더 강하게 다가오지요.

○임오경 위원 실효성보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되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 조치와 자료제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제출은 어떻게 보면 성의의 문제거든요,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하면 뭔가 있고 의심을 받으니까 제출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기술적 조치는 노력보다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심적인 부담은 주되 어려운 업체도 있고 하니 과태료 조항은 두지 않는……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세요? 진 위원님, 민 위원님.

○진종오 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민 위원님도?

○민형배 위원 아니에요. 저는 과태료 조항을 왜 빼자고 그러시는지……

○소위원장 박정하 뒤에 과징금이 나와요.

○민형배 위원 아니, 30배쯤 해야 되는데 5배 갖고 나오는 게……

○김승수 위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료제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지금 나와 있는 2배, 3배, 5배가 아니고……

○임오경 위원 과징금을요?

○민형배 위원 과징금을 훨씬 크게 해야 돼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민형배 위원 그런다면……

○소위원장 박정하 원 스트라이크 아웃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야 되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예, 그런 정도는 되게. 대통령은 30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임오경 위원 과태료를 넣지 말고 과징금에 있어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종오 위원 보니까 여기에 2배, 3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임오경 위원 3배, 5배.

○진종오 위원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민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재발, 재범이 안 나오지.

○임오경 위원 저는 3배로 했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저거를 그냥 버리면 과징금은 훨씬 강하게 해서……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서 과징금 내면 되거든.

○소위원장 박정하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논의되고 있는 것 이해되셨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예.

○소위원장 박정하 그것을 오늘 가급적 처리를 해 볼 테니까 사이에 문구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전문위원 김용규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놓고 과태료는 안 하고 그다음 것 자료제출 요구 같은 경우도 의무 규정으로 해 놓고 여기는 과태료를 주고.

○소위원장 박정하 ‘제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한다’.

○전문위원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쉬운 것부터 독립기구 먼저. 이것을 감시·감독하고 수집할 독립기구를 두는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신고기관 말씀입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예, 신고기관.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별도의 신고기관을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위원과 정부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고기관이 있는 걸로.

김 위원님.

○김승수 위원 신고기관은 지금 어디에 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은 좀 더…… 시행령도 필요하고요,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승수 위원 현재는 스포츠협회인가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거기는 몇 명이서 하기 때문에 역량이……

○김승수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차피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공연 티켓이나 스포츠 입장권이나 구분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신고기관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같은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민형배 위원 그래서 이 협회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기관을 두는 게 맞지요.

○임오경 위원 시행령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정하 신고기관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포상금.

○소위원장 박정하 포상금은 어떻게 돼요? 예산 범위 내와 기금에서 쓰는 방법과는 어떻게 돼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도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소위원장 박정하 예산 범위 내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금이든 예

산이 떨어지게 되면 못 준다는 의미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과정금을 신설하게 됐으니까 과정금에서 일부 포상금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거기까지…… 그것은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과정금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상은 예산의 세입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법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게 되면 정부로 들어가는 과정금 부과액의 10%를 예를 들어서 포상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일단 기재부나 저희들만이 아니라 좀 더 심도 깊은 협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과정금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

과정금의 범위, 지금 제출된 법률안은 2배·3배·5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진종오 위원** 여기 보면 판매금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2배는 정말 적은 거고요. 이것은 한 100배 정도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거래해서 티켓을 한 장 팔았어요, 10만 원을 팔았어요. 2배면 20만 원 벌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팔면 되잖아요. 이것은 배율이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의견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3배라고 냈는데 저도 많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이거는 법사위에 가서…… 저희가 법 전공한 분이 없어서.

전문위원님, 통상 과정금의 범주가 있을 텐데.

○**민형배 위원** 이럴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요. 판매금액으로 할 거냐, 이익금으로 할 거냐. 저는 이익금으로 하면 최소 10배 이상 돼야 된다고 봐요, 최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한말씀만 올리면 실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야구표를 사서 900만 원, 1000만 원에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의 10배면, 3배만 해도 3000만 원이 되는데 10배면 1억이 되거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근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이렇게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집행할 때 너무 이렇게 돼 버리면 이리 저리 회피하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봐 보세요. 10만 원짜리 티켓 사서 30만 원, 50만 원, 비싸 봐야 100만 원 이상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 몇 배 정도 해 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금액으로 하면……

- 진종오 위원 안 돼. 판매금액은 안 되는 게 맞고.
- 김승수 위원 아니, 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수익금은 또 그걸 산출해야 돼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그걸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냥 판매금액이라 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판 금액.
-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예, 웃돈 얹어 판 금액.
- 민형배 위원 하여튼 저는 최소한 10배 이상 돼야 된다고 봐요.
- 임오경 위원 티켓이 거의 100만 원에 팔리고 하더라고요.
- 소위원장 박정하 다른 위원님들은요?
- 민형배 위원 기준은 판매금액?
-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하지요. 판매금액 10배로 해서 법사위에서 조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렇게 해서……
- 진종오 위원 10배 하면 법사위 가서 또 논의하겠지요.
- 소위원장 박정하 국장님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선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과징금 다른 법 사례를 물론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3배나 많이 했을 때 5배까지는 봤고요.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배에서 50배까지 가능하지만 거기는 상한선이 3000만 원입니다.
- 원래 과징금을 규정할 때는 늘 상한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3배나 5배까지는 다른 법에서 많이 봤고요. 그 이상을 찾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용규 철도사업법에는 과징금은 아니고 부가운임의 징수라고 그래서 30배가 지금……
- 소위원장 박정하 거기는 30배도 있고요?
- 전문위원 김용규 철도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선영 그런데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 민형배 위원 그리 안 해요. 서울에서 광주 6만 원짜리 잘못해서 30배면 삼 육십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180만 원.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1000만 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통상은……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기준은 판매금액, 그다음에 배수는 하여튼 10배 이상으로 정하고 상한선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상한선 두는 것은……
- 소위원장 박정하 상한선을 두면 가령 아까처럼 100만 원짜리 티켓 해서 해 봐야 겨우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상한선은 더 높여야지.
-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지요. 판매금액으로 하고 법사위에서 조금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우리는 10배로 해서……
- 민형배 위원 10배면 적은데……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30.....

○민형배 위원 아까는 선택지가 2배·3배·5배였기 때문에 제가 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였는데 10배면 적어요.

○진종오 위원 그런데 보시면 과징금이 있고 또 처벌이 있으니까 이건 과징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처벌받잖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사법 처벌 또 있어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박정하 우선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는 우리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지요.

○민형배 위원 10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30배?

○임오경 위원 아니요.

○민형배 위원 일단 30배로 해 놓고 그다음에.....

○소위원장 박정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난친 것처럼 돼 버려서.....

○민형배 위원 아니, 장난은 아니고.....

○소위원장 박정하 법사위에 가서..... 어느 정도 리즈너블(reasonable)해야 되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가 우리 목표기 때문에 일단 30배로 해 놓고.....

○김승수 위원 30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10배 정도만 상징성으로..... 10배는 상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10배 하시지요.

○진종오 위원 처벌이 있잖아요, 징계랑. 그런 게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10배로.

○소위원장 박정하 예.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10배.

그러면 지금 13항까지 해서 논의할 것 남았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다음에 별칙은 현행 유지로 말씀드렸고요. 감면조항 말씀드렸고요. 몰수·추징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쟁점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소위원장 박정하 그다음에 지금 차관님 추가 말씀하신 쟁점 중에서 첨언하실.....

○민형배 위원 앞에 얘기라서 좀 그런데, 선거법이 그렇게 50배 한 건 이런 것 절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그래서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신설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소위원장 박정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9조의3, 신설입니다. 49조의3(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중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자진신고한 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6조의3에 따른 신고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 진종오 위원 딱히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쟁점은 없는 사안이고요.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1항부터 13항까지는 우리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논의하는 사이에 자구 정리해 오시면 그것 보고 의결하고……

○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과정금 기준을 그렇게 하고 몇 배나 할 거냐 이것은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많아요. 10만 원짜리 티켓을 20만 원에 팔았다. 10배면 200만 원밖에 안 돼.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 진종오 위원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원안 5배?

○ 진종오 위원 10배.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별이 따라가는데 과정금을 그냥 하나 더 내는 거잖아요.

○ 민형배 위원 아니, 이것은 300만 원의 과정금을 부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게 목표거든요.

○ 진종오 위원 일단은 처벌을 받잖아요. 과정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범죄라고 인정한 거니까.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민 위원님 말씀…… 저는 한 30배도 괜찮아요.

○ 민형배 위원 30배로 해 놓고……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그게 이익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이라서……

○ 민형배 위원 아니, 알아요, 알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20만 원의 10배.

○ 소위원장 박정하 김 위원님은 어떠세요?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내가 10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20만 원에 팔았다, 10배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부담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좀 돼요. 그런데 이걸……

○ 진종오 위원 암표 파는데 그 정도 가지고, 600이라고 부담 갖겠어요? 안 갖지.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올려야지. 올려야 돼.

○ 진종오 위원 충분히 더 해 먹겠지요.

○ 임오경 위원 많아지니까, 매크로로 해서 1000장씩 막 구매하니까 액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 소위원장 박정하 대통령은 몇 배 하셨다고요?

○ 민형배 위원 30배.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대통령하고 달리 가야지.

○ 민형배 위원 형사처벌보다는 이것은 부담을 크게 해 주는 게 맞다.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선거법처럼 50배.

○ 민형배 위원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못 하게 하는 법이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라.

○ 김승수 위원 다른 법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선거법하고는 차이가 있

잖아요.

○**임오경 위원** 지금까지 과징금을 5배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너무나 액수가 적다 보니까 불법자들의 부정행위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징금을 좀 더 해 놓으면 좋지 않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하고는 상관없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진종오 위원** 민형배 위원님이 강경하시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절대 안 굽히시는데 그렇게 가야지요, 뭐.

○**민형배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30배 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여기는 50배 하자고……

○**소위원장 박정하** 30배.

○**진종오 위원** 저는 아까 100배 얘기했어요.

○**소위원장 박정하** 김 위원님 괜찮으세요?

○**김승수 위원** 세계 가려면 아주 세계 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50배?

○**김승수 위원** 50배.

○**민형배 위원** 그래요. 저는 50배 괜찮아요.

○**소위원장 박정하** 그래요, 50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정하**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그냥.

○**임오경 위원** 문체부에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정하** 50배. 법사위에 가서 조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례가……

○**김승수 위원** 전례를 만들지 뭐.

○**임오경 위원** 전례는 상관이 없어요.

○**소위원장 박정하** 선거는 50배.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도 어딘가에 전례가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50배.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 원래는 더 세계 나왔는데 50배로 저희가 줄였다고 얘기하세요.

○**민형배 위원** 100배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50배로 줄인 거라고.

○**소위원장 박정하** 그것은 문구 조정이 되고 나면 의결하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2쪽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및 소멸시효 관련 통지 의무 신설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항공권을 구입한 탑승객이 항공권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항공권 취소·환불과 별개로 항공권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 완성 시 출국납부금의 기금 귀속, 환급청구 관련 사전통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출국납부금 환급 의무와 환급청구권 및 환급청구 절차 통지 의무를 부과할 대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환급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 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과 조문대비표는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금의 재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반영하여 출국납부금을 별도의 호로 추가하고 이하 법 조문의 용이한 표기를 위하여 출국납부금의 약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이 신설되는 경우 환급청구의 접수, 환급청구권자에 대한 환급과 청구 절차 등의 통지 업무 또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와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납부금 환급 의무와 환급청구권 및 환급청구 통지 의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부과하였으므로 김성원 의원 및 강대식 의원의 과태료 규정은 정부안과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전부 수용이고요.

○**소위원장 박정하** 전부 수용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전부 수용입니다. 환급청구권을 신설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등등 전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2쪽, 환급청구권 신설 그리고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 완성 시 출국납부금의 기금 귀속, 환급청구 관련 사전 통지,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부 수용하셨으면 추가 안 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10쪽, 소멸시효가 지난 출국납부금을 기금 귀속시키는 부분 그리고 별도의 호를 추가하고 출국납부금 약칭 마련하고 등등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임 위원님.

○**임오경 위원** 10월부터 코레일 이용 시 전날이나 당일 취소 시 과징금을 내게 돼 있

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취소 수수료……

○임오경 위원 취소 수수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이나 당일의 액수에 몇 %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기 때 만석이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당일 날이나 전날 취소를 한다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거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고요.

○임오경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건 내게 돼 있고 이거는 출국납부금이 원래 1만 원이었던 게 지금 7000원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티케팅을 했는데 그 티켓을 취소하고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으면 그건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임오경 위원 항공 취소 수수료를 낸다라면 저는 이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건 내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정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의결하도록 할게요.

더 추가 의견 있으시지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아까 1항부터 13항까지 문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정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수정된, 지금 배포된 문안, 쟁점된 부분들을 전문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2쪽입니다.

붉은색으로 된 거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페이지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500만 원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쪽, ‘판매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위원님들 다 확인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차관님도 다 확인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예, 확인했습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잠깐만.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의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선영 예.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게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의 포상금 지급 1항하고 2항이 원래 그 뒤쪽에 있는 14조랑 26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거는 6조의2에 관련된 거라 포상금이 부칙으로 가되 1항으로 가고 기존에 있던 1·2항이 한칸씩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45조의2(포상금 지급)에 보면 기존에 있던 1·2항의 경우가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신고 포상금, 암표 관련한 거는 6조의2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1·2항은 공단 이사장이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신설이 1항으로 가고 기존의 것이 2·3항으로 밀리면서 3항은 1항으로 가 아니라 2항에서 이렇게 바꿔 줬으면 하는 겁니다.

○ 입법조사관 오규환 그것은 중요 사항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고 내용상은 상관없는 겁니다.

○ 소위원장 박정하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수정해야 될 항의 조정 같은 것은 위원장께 맡겨 주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대현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승수 민형배 박정하 임오경 조계원 진종오

○ 청가 위원(1인)

김재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체육국장 이선영

관광정책국장직무대리 박미경